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848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 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17	정부	2024.10.16.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206521	여기구의원	2024.12.16.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4. 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4. 7.)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 취소·지원 중단시 정당한 사유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20조의2 신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1항제5호 중 “등록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컨설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실태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u></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컨설팅에 드</u></p>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 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실태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